

1. 개정이유

최근 그 실질이 개별주식과 유사한 국내 우량주를 추종하는 단일종목 ETF가 상장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 제도 관련 서식을 개정함으로써 공직윤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및 재산변동사항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를 개정하여 ‘증권’ 항목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을 상장주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가액 산정방법을 명시함

나. 주식(매각, 백지신탁) 신고서(별지 제14호의3서식), 주식(매각, 백지신탁) 공개목록(별지 제14호의4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별지 제14호의6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별지 제14호의7서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별지 제14호의8서식),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별지 제14호의17서식)를 개정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작성방법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별첨

2) 입법예고 전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1쪽의 8.증권의 작성방법란 중 제3호와 제7호를 다음

과 같이 한다.

작성방법
3. '증권의 종류'란 작성방법 ○ 상장주식·비상장주식(제3시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스톡 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으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상장주식으로 등록하십시오. 7. 가액산정방법 ○ 원칙적으로 증권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적으십시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가액 산정방법도 위와 동일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음)을 제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적되, 지급받을 주식에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적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적으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12쪽의 8. 증권 작성방법란 중 제4호와 제8호를 다

음과 같이 한다.

작성방법특기사항
4. '증권의 종류'란 작성방법 ○ 상장주식·비상장주식(제3시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스톡 옵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으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상장주식으로 등록하십시오. 8. 가액산정방법 ○ 원칙적으로 증권 가액산정은 액면가로 합니다.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가액 산정방법도 위와 동일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음)을 제출하십시오.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적되, 지급받을 주식에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적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적으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별지 제14호의3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2호, 제5호 중 “상장주식”을

“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

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4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 중 “상장주식”을 “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6서식 제2쪽 작성방법란 제2호, 제3호, 제4호 중 “상장주식”을 “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7서식 제2장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상장주식”을 “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8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2호, 제3호 중 “상장주식”을 “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의17서식 제2장 작성방법란 제2호 중 “상장주식”을 “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 재산등록 신고서

(17쪽 중 1쪽)

신고인 (등록 의무자)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	
	주민등록번호		직급 등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직장 ()	전자우편주소	
	주소	자택 (-)	거주형태	
		직장 (-)		

등록 사항	재산등록 기준일	
	재산등록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	[] 부동산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현금·수표 [] 예금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 증권 [] 채권 [] 채무 [] 금·백금 [] 보석류 [] 골동품·예술품 [] 회원권 []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 재산등록사항 없음
	그 밖의 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	[] 친족 등록 여부 [] 공개 [() 신규 / () 승진] [] 비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재산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

작성방법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 방법

가.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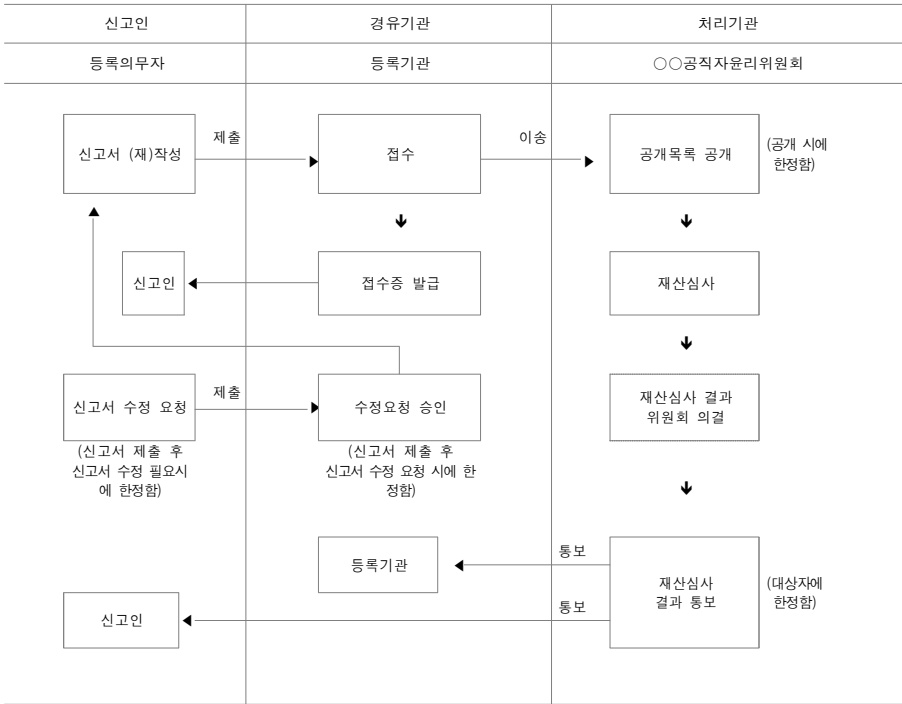
나.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17쪽 중 2쪽)

업무 처리절차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1. 친족사항(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일련 번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고지 거부	등록 대상	직업	거주형태
					[]	[]		
					[]	[]		
					[]	[]		
					[]	[]		
					[]	[]		
					[]	[]		
					[]	[]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하신 분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 []이혼 []사별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자녀 없음

작성방법

1.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등록재산의 유무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적으십시오.
2.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3. '고지거부'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등록대상'란: 배우자,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하십시오.
5. '직업'란: 직장명·직위, 학교명·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6.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

2. 최초재산등록신고 총괄표

※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종류	가액 (실거래가 격)	형성과정	비고
▶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소계)						
				()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 건물(소유권·전세권)(소계)						
				()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 현금(수표 포함)(소계)						
▶ 예금(소계)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소계)						
			기타 비상장주식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기타:	
▶ 채권(소계)						
			사인 간 채권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 채무(소계)						
			사인 간 채무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기타: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소계)						
				()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종류	가액 (실거래가 격)	형성과정	비고
▶ 보석류(소개)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개)						
				()		
▶ 회원권(소개)						
				()		
▶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개)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 고지거부 사항						
총계						

작성방법
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되, 다음의 권리명세를 적으십시오. ○ 토지: 소재지·면적 등을 적으십시오(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 ○ 건물: 소재지·면적 등을 적으십시오(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 ※ 미입주 분양아파트도 적으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의 작성방법 참조 ○ 현금(수표 포함) ○ 예금: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파생상품중개 포함).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증권: 예탁기관·종목명·보유량 등을 적으십시오(예: ○○증권 ○○전자(보유량 100주)). ○ 채권: 채무자명과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를 적으십시오. ○ 채무: 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명과 연락처를, 건물임대 채무는 물건 주소를 적으십시오. ○ 금·백금: 종류·합량·중량 등을 적으십시오. ○ 보석류: 보석의 종류·크기·색상 등을 적으십시오. ○ 골동품·예술품: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적으십시오. ○ 회원권: 발행인, 회원권 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지식재산권: 명칭·등록번호·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적으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회사명, 출자가액, 지분비율,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 매출액을 적으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법인명, 출연재산, 보유직위 등을 적으십시오. ○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등을 적으십시오. 2. 관계 및 권리자 ○ 본인과의 관계 및 친족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사항'란에 본인과의 관계를 적은 후 '비고'란에 고지거부 사유 및 고지거부 허가 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예: 독립생계유지, 2007. 3. 3.). 3.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건물):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분양권 등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광업권·어업권·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 현금 ○ 예금: 예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예, 수의증권 등). ○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예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 증권: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 사인 간 채권 등 ○ 채무: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백금: 금·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 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예술품: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철기 등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4. 가액 ○ '가액'란은 재산항목별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 () 안에는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으십시오. 5. 형성과정 ○ 재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건물), 증권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사인 간 채권, 사인 간 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가상자산에 대하여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제7항 각 호의 사람은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하여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6. 총계 ○ 재산항목별 가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합산하여 적되,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마십시오.

3. 부동산

가.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며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적으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
-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고,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 '지목'란 작성방법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요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표시하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지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적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적으십시오.
 -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적지 마십시오.
-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 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전금은 완납했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 각 호의 사람은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나. 건물(소유권·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건물 면적 (㎡)	대지 면적 (㎡)	종류 및 용도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권리의 종류'란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으며, 미등기 권리는 '비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비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비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
-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적으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 '종류 및 용도'란 작성방법
 - 종류: 일반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빌딩 등
 - 용도: 주택·상가·사무실·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
-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 주택은 '가액'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은 '가액'란에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 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산정
 - ※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
 - 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전세권, 임차권인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의 금액을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총납부액을 적고, '비고'란에 총분양가액을 적으십시오.
 - ※ 최초 신고 시 분양권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란은 적지 마십시오.
-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비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전금은 완납했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무허가건물의 경우
 - 허가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패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적고, '비고'란에 "무허가건물"이라고 적으십시오.
- 주택·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적으십시오.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동산(건물)]에 신고하지 말고 [회원권]에 신고하여야 하며, 면적은 비고란에 적으십시오.
-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 각 호의 사람은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매입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권리의 명세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어업권 및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적으십시오.
- ‘권리의 명세’란 작성방법
 - 광업권·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적으십시오.
 - 자동차: 차명·제작연도·배기량·차량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건설기계: 기종명·제조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선박: 종류·용도·선박명·총톤수·건조연도·선박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항공기: 기종·형식·제작자·제작연도 등을 적으십시오.
-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가액’란에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나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동산에 관한 권리는 ‘가액’란에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평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비고’란에 가액산정방법 기재(예: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실거래가격)

- 권리를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5. 현금(수표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보유액(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소유자별로 합계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며, 현금과 수표는 합산하십시오.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현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비고’란에는 현금을 보유하게 된 사유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6.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소유자별로 예금의 합계액(「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를 등록하되,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은 별도의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 계좌별 1천만원 이상이 아닙니다.
-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에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 ※ 사모펀드의 경우 ‘예탁기관’란에 ‘자산운용사’, ‘예금의 종류’란에 ‘펀드명’, ‘비고’란에 ‘사모펀드유형’(예: 전문투자형 또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을 적으십시오.
-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만기계약금액, 동창회비, 친목회비, 문중회비” 등 특이사항을 적으십시오.
- 파생상품증거금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파생상품거래의 대상물, 계약금액, 최종거래일 등 권리·의무사항을 간략히 적으십시오.
- 외화예금 또는 외국 거래소에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비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예금의 종류	계좌번호	개설일	만기일	보유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예금의 종류’란에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저축예금 및 양도성예금증서(CD), 저축성이 가미된 보험(100퍼센트 보장성보험만 제외)·수익증권(펀드 등)·금융투자기관에 예탁한 투자자에탁금(파생상품위탁증거금 포함),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가상자산예치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등록하십시오.
- ‘보유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적립된 금액 또는 평가금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해당 계좌가 수입용인지 지출용인지 적으십시오.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예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8.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증권의 종류	예약기관	발행인 (종목명)	행사가격	수량	가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계좌번호	종목코드	행사기간				
			기타 비상장주식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기타: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소유자별 증권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등록대상자의 모든 계좌의 증권을 등록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합계액에 관계없이 적으십시오.
- '증권의 종류'란 작성방법
 - 상장주식·비상장주식(제3시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소득증권)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으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은 상장주식으로 등록하십시오.
-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이 발행인(예: 재정경제부, 경상북도, ○○철강)을 적고, 주식인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포함) 종목명 또는 법인명(예: ○○증권, xx전자)을 적으십시오.
- '종목코드'란: 증권이 발행인(예: ○○증권, xx전자)을 적고, 종목코드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발행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18. 1. 1. ~ 2019. 12. 31.): 증권이 발행인(예: ○○증권, xx전자)을 적고, 주식인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포함) 종목명 또는 법인명(예: ○○증권, xx전자)을 적으십시오.
- 가액산정방법
 - 원칙적으로 증권이 발행인(예: ○○증권, xx전자)을 적고, 종목코드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발행인의 법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최종가격(재산등록 기준일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으로 산정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의 기준가(거래량가중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격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비고'란에 적으십시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가액 산정방법도 위와 동일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제3항제1호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출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음)을 제출하십시오.
 -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역면가로 신고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적되,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이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적고,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적으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액'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계약 체결 금액을 적고, '비고'란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여부를 적으며, 다음 변동신고 시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된 사항을 등록하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기타 비상장주식(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재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등
 - 취득경위: 목적, 방법(매입·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9. 채권

일련 번호	채권자	관계	채권의 종류	채권액 (천원)	발생일	만기일	채무자		형성과정	비고
							채무자명	주소		
			사인 간 채권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채권자별로 채권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물로 구분하여 따로 적으십시오.
-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적으십시오.
-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부동산의 전세권(임차권)은 "3. 부동산" 항목에 적고, "9. 채권"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
-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계약이체일, 차용증상 대어일 등
 - 취득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0. 채무

일련 번호	채무자	관계	채무의 종류	채무액 (천원)	계좌번호	발생일	만기일	채권자		형성과정	비고
								채권자명	주소		
			사인 간 채무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기타: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채무자별로 채무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되, 반드시 건물로 구분하여 따로 적으십시오.
- 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적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적고, '비고'란에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일 경우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계약이체일, 차용일 등
 - 취득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11.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함량	보유중량 (g)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금 및 백금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금·백금의 종류 또는 금·백금 제품명을 적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백금은 "12. 보석류 " 항목에 적고, "11. 금 및 백금 "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
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시장가격(매도가격)×보유중량(g)"을 적으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적으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백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보석류

일련 번호	소유자	관 계	종류	크기	색상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품목당 보석류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4.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적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적으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적으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3. 골동품 및 예술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작품 명세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품명	크기 (cm)	작가	제작 연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골동품 또는 예술품의 품목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도자기·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유채화·판화 등)·서예·공예·조각·수예·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4.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적으십시오.
5.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cm)로 적으십시오.
6. '가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전문가 등의 평가액을 적되, 평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실거래가격"을 해당란에 적으십시오.
○ 매매 등 거래를 통하여 구입한 재산에 대해서는 '실거래가격'란에 실매입액 등을 적으십시오.
○ '비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예술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4. 회원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 계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소재지	가액 (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원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등기가 되어 있는 곳)을 적으십시오.
4. 회원권은 취득가액을 '가액'란에 적되, 골프회원권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적고, 둘 중 어느 하나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가격을 적으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5. 지식재산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권리의 명세	소득금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3. '종류'란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적으십시오.
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십시오.
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적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비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병·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일련 번호	출자자	관계	회사명	대표자	자본금	출자가액	회사연간	형성과정	비고
			소재지	영업종류	설립일	출자지분	매출액(천원)		
								• 취득일자: • 취득경위: • 소득원: • 기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출자가액'란에는 출자한 금액을, '출자지분'란에는 총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을 적으십시오.
3.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으십시오.
4.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등
 - 취득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목적 등
 - 소득원: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17.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일련 번호	출연자	관계	출연재산 (천원)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형성과정	비고
					소재지	목적사업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에·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3. '출연재산'란에는 출연금액 또는 출연재산을 적으십시오.
4.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직무를 적으십시오.
5.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출연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18. 가상자산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거래 소명	가상 자산명	심볼 종목 코드	가격	수량	가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 취득(상실)일자: · 취득(상실)경위: · 소득원(사용처): · 기타: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소유자별로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의 경우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명(서비스명)을 적으십시오.
 -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영문 또는 한글로 정식 거래소명을 적으십시오.
 - 개인 간 교환·매매 등의 경우
 - － 개인 간 교환·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상실일자, 거래금액, 교환 매물 등을 적으십시오.
 - － 그 밖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거래 상대방과 취득·상실일자 등을 적으십시오.
-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
- '가액'란 작성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5호의 가격을 곱하여 적으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매입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고인 (등록 의무자)	성명	(한글)	소속	
		(한자)	직위	
	주민등록번호		직급 등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직장 ()	전자우편주소	
	주소	자택 (-)	거주형태	
직장 (-)				

등록 사항	재산등록 기준일		
	재산등록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현금·수표 []예금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증권 []채권 []채무 []금·백금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회원권 []지식재산권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가상자산 []재산변동사항 없음	
	그 밖의 사항 (해당 항목에 “√” 표시)	[]친족 등록 여부	[]공개 []비공개
	신고구분 (해당 항목에 “√” 표시)	[]정기변동 []퇴직 []의무면제 []재등록 []재공개	

본인은 공직자로서 명예를 걸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서약하며,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별지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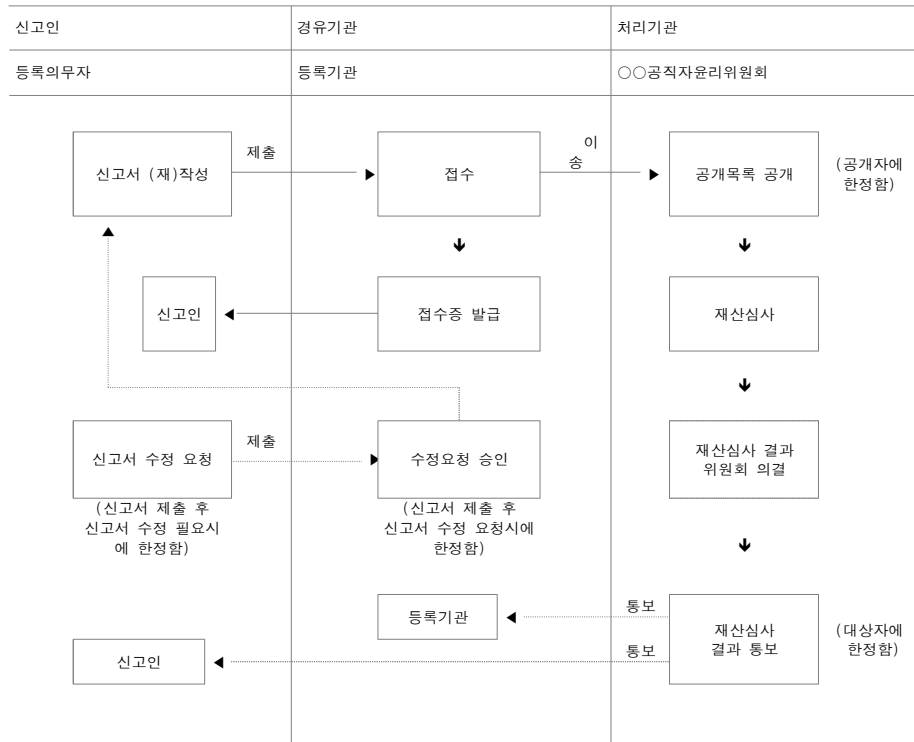
등록기관의 장 귀하

작성방법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 방법
가.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나.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

업무 처리절차

이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1. 친족사항(등록의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일련 번호	성명	관계	주민 등록번호	주소	고지 거부	등록 제외	등록 대상	직업	변동 사유	거주형태
					[]	[]	[]			
					[]	[]	[]			
					[]	[]	[]			
					[]	[]	[]			
					[]	[]	[]			
					[]	[]	[]			

※ 직계존속(부모) 중 사망 등 등록제외 대상인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 []모

※ 배우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혼 []이혼 []사별

※ 자녀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대상 자녀 없음

작성방법

- 출생·사망·결혼·이혼·입양 등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신분상 변동이 있거나 부양관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적으십시오.
-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십시오.
- ‘고지거부’란: 「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의 경우에는 “√” 표시를 하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3년마다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등록제외’란: 이미 신고한 친족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 “√” 표시를 하십시오.
- ‘등록대상’란: 등록제외가 아닌 배우자, 등록제외나 고지거부가 아닌 직계존속·직계비속은 “√” 표시를 하십시오.
- ‘직업’란에는 직장명·직위, 학교명·학년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 ‘변동사유’란에는 친족사항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예: 출생, 사망, 이혼 등)
- ‘거주형태’란: 주소지의 거주형태(자가, 전월세, 기숙사, 관사, 친척집 등)를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80g/㎡)]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

※ 뒤에 나오는 재산항목별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십시오.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 종류	종전 가액	변동액		현재 가액	형성과정	변동 사유
					증가액 (실거래가액)	감소액 (실거래가액)			
▶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소계)									
					()	()			• 취득(상실)일자: • 취득(상실)경위: • 소득원(사용처): • 기타:
▶ 건물(소유권·전세권)(소계)									
					()	()			• 취득(상실)일자: • 취득(상실)경위: • 소득원(사용처): • 기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현금(수표 포함)(소계)									
▶ 예금(소계)									
▶ 「정차자금법」에 따른 정차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소계)									
▶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 선택권 등)(소계)									
			기타 비상장주식 (「공정거래법」 제43조제3항 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 취득(상실)일자: • 취득(상실)경위: • 소득원(사용처): • 기타:
			주식매수 선택권						• 취득(상실)일자: • 취득(상실)경위: • 기타:
▶ 채권(소계)									
			사인 간 채권						• 취득(상실)일자: • 취득(상실)경위: • 소득원(사용처): • 기타:
▶ 채무(소계)									
			사인 간 채무						• 취득(상실)일자: • 취득(상실)경위: • 소득원: • 기타:
▶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소계)									
					()	()			

재산항목	관계	권리자	권리 종류	종전 가액	변동액		현재 가액	형성과정	변동 사유
					증가액 (실거래가액)	감소액 (실거래가액)			
▶ 보석류(소계)									
					()	()			
▶ 골동품 및 예술품(소계)									
					()	()			
▶ 회원권(소계)									
					()	()			
▶ 지식재산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 취득(상실)일자: • 취득(상실)경위: • 소득원(사용처): • 기타: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 취득(상실)일자: • 취득(상실)경위: • 소득원(사용처): • 기타:
▶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									
총계									증감액: (가액변동:)

작성방법

1. 재산항목

- 재산종류별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되, 다음의 권리명세를 적으십시오.
- 토지: 소재지·면적 등을 적으십시오(임야·전·답·대지·잡종지 등).
- 건물: 소재지·면적 등을 적으십시오(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사무실 등).
 - ※ 미입주 분양아파트도 적으십시오.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의 작성방법 참조
- 현금(수표 포함)
- 예금: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파생상품중거금 포함).
- 「정지자금법」에 따른 정지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개인별·예탁기관별로 예탁기관명·계좌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증권: 예탁기관·종목명·보유량 등을 적으십시오(예: ○○증권 ○○전차(보유량 100주)).
- 채권: 채무자명과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를 적으십시오.
- 채무: 금융기관 채무는 은행명·계좌번호를, 사인 간 채무는 채권자명과 연락처를, 건물임대 채무는 물건 주소로 적으십시오.
- 금·백금: 종류·합량·중량 등을 적으십시오.
- 보석류: 보석의 종류·크기·색상 등을 적으십시오.
- 골동품·예술품: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을 적으십시오.
- 회원권: 발행인, 회원권 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지식재산권: 명칭·등록번호·저작물의 종류 등 구체적 권리명세를 적으십시오.
-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회사명, 출자금액, 지분비율, 재산등록 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 매출액을 적으십시오.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법인명, 출연재산, 보유직위 등을 적으십시오.
- 가상자산: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 등을 적으십시오.

2. 관계 및 권리자

- 관계는 본인과와 관계를 적으십시오.
- 권리자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직계존속·직계비속도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와 관계를 기재한 후 '변동사유'란에 고지거부 사유 및 고지거부 허가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예: 독립생계유지, 2007. 3. 3.).
- 이미 신고한 신고대상자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결혼한 딸이 있는 경우 '고지거부 및 등록제외 사항'란에 본인과와 관계를 적은 후 '변동사유'란에 등록제외 사유, 등록제외일 등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예: 사망, 2007. 5. 3.).

3. 권리종류

- 부동산(토지·건물): 소유권·지상권·전세(임차권)·사실상 소유권·분양권 등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광업권·어업권·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
- 현금
- 예금: 예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예: 보통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험, 공채, 수익증권 등).
- 「정지자금법」에 따른 정지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의 예금: 예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 증권: 상장주식·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배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 채권: 사인 간 채권 등
- 채무: 금융기관 채무, 사인 간 채무, 건물임대 채무 등
- 금·백금: 금·백금의 종류 또는 제품명
- 보석류: 보석의 종류(다이아몬드 등) 또는 제품명
- 골동품 및 예술품: 도자기·서양화·동양화·서예·공예·수예·조각·철기 등
- 회원권: 골프회원권, 헬스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 지식재산권: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 가상자산

4. 종전가액: 종전 신고시점의 재산가액을 적으십시오.

5. 변동액: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 안에는 실거래가액을 적으십시오.

6. 현재가액: 종전가액에서 변동액을 반영한 금액을 적으십시오.

7. 형성과정

- 재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부동산(토지·건물), 증권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 사인 간 채권, 사인 간 채무,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가상자산에 대하여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제7항 각 호의 사람은 부동산(토지·건물)에 대하여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해당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8. 변동사유

-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재산증감 변동원인을 적고, 재산의 증감일자·증감경위·소득원 등 소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하십시오.
- 예금, 증권 및 가상자산의 '변동사유'란에는 총변동액의 변동원인을 기재(개인별 변동사유 기재는 생략)하되 개인별·계좌번호별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적으십시오.

9. 총계

- 재산항목별 가액 또는 실거래가액을 합산하여 적되, 증권 중 주식매수선택권, 지식재산권,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총계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3. 부동산

가. 토지(소유권·지상권·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천원)				실거래 가액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지번분할·합병 등으로 면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 가액 변동으로 평가액이 증감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가. 토지' 항목이 아닌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나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에는 대지 소유자의 경우 대지는 '가. 토지' 항목에 적으시고, 건물 소유자의 경우 건물은 '나. 건물' 항목에 적으십시오.
-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목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증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관계를 적으십시오.
-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을 적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적으십시오.
- '지목'란 작성방법
 -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원림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등으로 적으십시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가액'란의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액(실매입액)을 적되,
 -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면적(㎡)을 적으십시오.
 - 분양권: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적고, '실거래가액'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자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수용·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액'란에 실매도액 또는 보상액을 적으십시오.
 -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면적(㎡)을 적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액을 적으십시오.
-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 공동소유 토지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종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소명자료(「공직자윤리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변동경위·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 외국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은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나. 건물(소유권·전세권)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 의 종류	소재지	종류 및 용도	대지 면적 (㎡)	건물면적(㎡)				가액(천원)				실거래 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② 중축 등으로 면적이 변동된 경우, ③ 부동산의 공시가격 등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신고하십시오.
- ① 등기명의인이 아니면서 사실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상속 중인 재산 등) '변동사유'란에 "사실상 소유"라고 표시하고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 및 관계를 적으며, ② 본인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타인 소유인 경우(문중재산 등)에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실 관계를 적으십시오.
- '권리의 종류'란 작성방법
 -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임차권), 사실상 소유권 또는 분양권으로 적고, 미등기 권리는 '변동사유'란에 "등기 미완료"라고 표시하십시오.
- 면적은 대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해당란에 적으십시오(1평은 3.3㎡로 계산).
- '종류 및 용도'란
 - 종류: 일반단독주택·다가구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빌딩 등
 - 용도: 주택·상가·사무실·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 등
-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 ① 매매·상속·증여 등 부동산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다만, 증여·상속 등으로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서 공시한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을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 상가·빌딩·오피스텔, 그 밖의 부동산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여 '가액'란에 적으십시오.
 - 대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표준공시지가의 적용)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면적(㎡)"으로 산정
 - 건물가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 중 최고가액"으로 산정
 - 분양권의 경우: '가액'란에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적고, '실거래가격'란은 분양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 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경우: "계약서상의 치료·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의 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수용·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이전된 경우: '가액'란에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실패도액 또는 보상액을 적으십시오.
 - ② 소유권 변동 없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 종전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공시가격을 적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수용·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 공동소유 건물인 경우 '면적', '가액'란에는 소유지분을 등록하고, '변동사유'란에는 전체지분을 적고 "공유", "합유" 등 공동소유의 형태를 표시하십시오.
-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는 경우
 - 매도한 경우: 매수자가 잔금은 완납하였더라도 본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면 그 재산을 등록하십시오.
 - 매입한 경우: 중도금을 지급한 때부터 등록하며, '현재가액'란에 지급한 총금액을 적고, '변동사유'란에 계약관계와 총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 다만, 계약금만 주고받은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 무허가건물의 경우에는 허가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해야 하며, '가액'란에는 실패입액이나 사실상 거래가액을 적으십시오.
- 주택·상가 등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은 "10. 채무" 항목에 적으십시오.
- 외국 소재 부동산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적고 '변동사유'란에 외화종류(달러, 유로, 파운드 등)를 적으십시오.
- 소명자료(「공직자윤리법」 제6조제8항)
 - 변동일자·변동경위·소득원, 그 밖의 재산증감 원인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은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매입일, 매도일, 상속일, 증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토지를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일련 번호	권리자	관계	권리의 종류	권리의 명세	가액(천원)				실거래 가격(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권리의 종류'란에는 광업권·어업권 및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권 또는 저당권 등으로 적으십시오.
- '권리의 명세'란 작성방법
 - ① 광업권·어업권: 광물의 종류 또는 어업면허의 종류, 소재지, 존속기간 등을 적으십시오.
 - ② 자동차: 차명·제작연도·배기량·차량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③ 건설기계: 기종 명·제조회사·제작연도·건설기계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④ 선박: 종류·용도·선박명·총톤수·건조연도·선박등록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 ⑤ 항공기: 기종·형식·제작자·제작연도 등을 적으십시오.
- 가액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
 - 매입한 경우: 실거래가격(실매입액)을 적으십시오.
 - 매도한 경우: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패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증여·상속 등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다음의 평가액(이하 "평가액"이라 한다)으로 등록하십시오. 이 때 가액은 번호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광업권·어업권: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광업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평가액
 - 자동차: ① 자동차보험의 차량기준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건설기계: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선박: ① 선박보험상 선박가액 ②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항공기: ①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②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
 - ② 미거래로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종전가액을 평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평가액을 확인하여 증감을 적으십시오.
 - 종전가액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액을 적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이 실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거래가격을 적으십시오.
 -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 ①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 등이 변동된 경우에 따른 평가액을 적으십시오.
 - 가액산정방법을 참고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평가액을 확인하고 증감을 신고하십시오.
- '변동사유'란에는 매도·매입·상속·증여·유증·존속기간 만료·가액변동 등 권리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8. 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 등)

일련 번호	소 유 자	관 계	증권의 종류	에탁 기관	발행인 (종목명)	행사 가격	수량				가액(천원)				형성과정	특기 사항
				계약 번호	종목 코드	행사 기간	중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중 전	증 가	감 소	현 재		
			기타 비상장 주식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 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주식매수 선택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기타:	

작성방법특기사항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 ① 신규로 증권을 취득한 경우
 - ② 종전에 신고한 증권 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 ③ 종전에 신고한 주식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추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 주식변동사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3. 종전 신고 시에는 함께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함께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모든 계좌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4. '증권의 종류'란 작성방법
 - 상장주식·비상장주식(제3시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국채·공채·회사채·백지신탁·주식매수선택권(소득음션)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으십시오.
 - 금융투자상품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은 주식으로 등록 하고, 같은 조 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펀드 등)은 "6. 예금" 항목에 등록하십시오.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 일종목 ETF)은 **상장주식으로 등록하십시오.**
5. '발행인(종목명)'란: 증권이 발행인인 경우 발행인(예: 재정경제부, 경상북도, ○○철강)을 적고, 주식인 경우(주식매수선택권 포함) 종목명 또는 법인명(예: ○○증권, ××전자)을 적으십시오.
6. '종목코드'란: 증권이 발행인인 주식인 경우에만 적되, 종목코드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발행본인의 법인등록번호 를 적으십시오.
7. '행사가격'(1주당)과 '행사기간'란(예: 2018. 1. 1. ~ 2019. 12. 31.): 증권이 발행인인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에만 적으십시오.
8. 가액산정방법
 - 원칙적으로 증권이 발행인인 액면가로 합니다. 다만, 주식 중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액의 최종가액(재산 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액)으로 산정하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액의 기준가(거래량중량평균가)를 말하며,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전에 거래가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기준가)로 산정하며, 최종가액 및 기준가의 기준일을 각각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의 가액 산정방법도 위와 동일합니다.**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기타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 으로 가액을 산정하십시오.
 -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제출하고, 같은 항 제 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4서식(별지 제1호의4 서식은 해당 법인의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로 대신할 수 있음)을 제출하십시오.
 - ※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을 산정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기사항'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고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액면가로 신고하십시오.
 - 주식매수선택권은 지급받을 주식의 수량을 적되, 지급받을 주식의 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가액'란에 현재시가를 적고, 비상장주식인 경우 에는 '가액'란에 행사가격을 적으십시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가액은 총괄표상 총계에는 합산하지 마십시오.
 - ※ 주식선택권의 일종인 스톡어워드(stock award)도 등록대상입니다.
9. 전년도까지 신고된 증권 수량 및 가액은 '종전수량'란 및 '종전가액'란에 적으십시오.
10.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증권이 종류(상장주식·비상장주식 등)를 달리하여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11.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7호의 산정가격을 곱하여 적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
12. 재산변동신고 기간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주식백지신탁 계약일이 속한 연도말 기준으로 신고하되, 증권이 종류란에는 백지신탁으로 적고 '특기사항'란에 신탁일자, 신탁회사를 적으십시오.
13. 건물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 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증권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14.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증권의 종류'가 기타 비상장주식(같은 법 제4조 제3항제7호에 따른 그 외의 주식) 및 주식매수선택권인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주주명부 등제일, 매도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및 행사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증권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9. 채권

일련 번호	채권자	관계	채권의 종류	채권액(천원)				발생일	채무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중전	증가	감소	현재		채무자명	주소		
			사인 간 채권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채권의 종류'란에는 사인 간 채권, 기타로 적으십시오.
3. 신규 채권이 발생하거나 종전에 신고한 채권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신고하고, 전년도까지 신고된 채권의 총액은 '종전 채권액'란에 적으십시오.
4.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함께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 채권액'란 및 '현재 채권액'란에 적어 등록하십시오.
5. 주택이나 그 밖의 부동산에 설정한 전세권(임차권) 등은 "3. 부동산" 항목에 적고, "9. 채권"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
6.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무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7.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권의 종류'가 사인 간 채권인 경우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계약이체일, 차용증상 대어일, 채권 환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채무자와의 관계, 발생사유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등 해당 채권의 자금 출처, 채권을 환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8. '변동사유'란에는 증감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10. 채무

일련 번호	채무자	관계	채무의 종류	채무액(천원)				계좌번호		채권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중전	증가	감소	현재	발생일	만기일	채권자명	주소		
			사인 간 채무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 ·기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채무의 종류
 - 금융채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 사인 간 채무
 - 건물(또는 토지) 임대 채무
3. 종전 신고 시에는 소유자별 1천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하여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1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증가 채무액'란 및 '현재 채무액'란에 적어 등록하십시오.
4. 전년도 신고된 채무액을 '종전 채무액'란에 적고, 현 보유채무액을 '현재 채무액'란에 적으십시오. 이 때 종전에 신고한 채무액에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현재 채무액에서 종전 채무액을 감하여 그 증감액을 '증가 채무액'란 또는 '감소 채무액'란에 적으십시오.
5. 금융채무인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해당란에 적고, '채권자명'란에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6.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 항목에 적고, '변동사유'란에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등으로 표시하십시오.
7. 사인 간 채무인 경우에는 '주소'란에 채권자의 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8.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채무의 종류'가 사인 간 채무인 경우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만 해당함)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계약이체일, 차용일, 채무 상환일 등
 - 취득(상실)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의 사용목적 등
 - 소득원: 채무를 상환한 경우 상환금의 출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11.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함량	보유총량(g)				가액(천원)				실거래 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소유자별로 합계 500만원 이상의 금·백금을 새로 보유하거나(종전에 500만원 미만이어서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된 경우 포함) 이미 등록된 금·백금이 감소되었을 경우에 등록하고, 전년도까지 등록된 보유량을 '종전 보유총량'란에 적으십시오.
- '종류'란에는 금·백금의 종류 또는 금·백금의 제품명을 적되, 보석류에 붙어 있는 금·백금은 "12. 보석류" 항목에 적고, "11. 금 및 백금" 항목에는 적지 마십시오.
- 같은 함량의 금 또는 백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도 '증가 보유총량'란이나 '감소 보유총량'란 및 '현재 보유총량'란에 적으십시오.
- 가액산정방법
 - 매매·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 매입한 경우에는 실패입액을 적고, 매도한 경우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고 '실거래가격'란에 실패도액을 적으십시오.
 - 증여·상속 등 실패거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시장가격[매도가액기준/(g)]을 확인하여 보유총량과 공급 가액을 적으십시오.
 - 미거래로 실패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시장가격을 확인하여 증감을 적으십시오.
-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가액변동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금·백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2. 보석류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크기	색상	가액(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보석류가 감소된 경우에 등록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 '종류'란에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진주목걸이 등 보석의 종류 또는 보석제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 가액산정방법
 - 매입 시에는 실패거래가격(실패입액) 등을 적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적되 실패도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증여·상속 등으로 실패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보석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
- 실패거래가격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적으십시오.
-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보석류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13. 골동품 및 예술품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작품 명세				가액(천원)				실거래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품명	크기 (cm)	작가	제작 연대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또는 예술품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골동품 또는 예술품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되, 거래 없이 계속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 변동하지 않고 종전가액을 그대로 유지하십시오.
- '종류'란에는 도자기·회화(동양화·서양화·유화·수채화·판화 등)·서예·공예·조각·수예·칠기 등 골동품 및 예술품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 '품명'란에는 작품명과 작품의 특기사항을 적으십시오.
- '크기'란에는 가로×세로×높이를 센티미터(cm)로 적으십시오.
- 가액산정방법
 - 매입 시에는 실패거래가격(실패입액) 등을 적고,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적되 실패도액 등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상속 등으로 실패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화랑협회 등의 기관이나 전문감정사 등 전문가의 평가액을 등록합니다. 이 때 '변동사유'란에는 평가액을 산정한 전문가·전문가집단의 이름 또는 상호명과 그 연락처 등을 적으십시오.
-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증감원인을 적으십시오.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골동품·예술품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4. 회원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발행인	회원권번호	소재지	가액(천원)				실거래 가격 (천원)	형성과정	변동 사유
							종전	증가	감소	현재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권당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회원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원권이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가액산정방법
 - 가. 회원권은 매입 시에는 실패거래가격(취득가액)을 해당란에 적으십시오. 매도 시에는 종전가액을 감소하여 해당란에 적고, 실패도액을 '실거래가격'란에 적으십시오.
 - 나. 다만, 골프회원권의 경우
 - 매입·상속·증여 등으로 소유권이 추가된 경우 '가액'란에 실패거래가격(취득가액)을 적되, 증여·상속 등으로 실패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를 적으십시오.
 - 미거래 시에도 재산등록 기준일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를 확인하여 가액을 변동하여 적으십시오. 다만, 이전 재산등록 시 신고서에 실패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패거래가격보다 높을 때에는 기준시가를 신고하고,
 -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의 기준시가가 신고된 실패거래가격보다 낮을 때에는 기존 실패거래가격을 유지합니다.
 - '소재지'란에는 회원권이 있는 곳을 적으십시오.
 - '변동사유'란에는 매입·매도·상속·증여·가액변동 등 증감 원인을 적으십시오.
 -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회원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15. 지식재산권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종류	권리의 명세	소득금액 (천원)	형성과정	변동사유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소유자별로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을 새로 보유하거나 이미 등록된 지식재산권이 양도 등으로 변동된 경우 또는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종류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을 적으십시오.
4. '권리의 명세'란에는 발명(고안)의 명칭 및 등록번호, 저작물의 종류, 권리의 존속기간 등 지식재산권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적으십시오.
5. '소득금액'란에는 지식재산권으로 인하여 생긴 연간소득금액을 적고, 소득원인행위 등을 '변동사유'란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신규등록·매도·존속기간만료 등 권리의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7.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취득일자·취득경위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16.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

일련 번호	출자자	관계	회사명	대표자	자본금	변동사항						형성과정	변동 사유
			소재지	영업종류	설립일	출자가액 (천원)		출자지분		회사 연간매출액 (천원)			
						종전	현재	종전	현재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새로 출자하거나 이미 등록된 회사의 출자가액·출자지분이나 매출액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3. 자본금이 증감한 경우에는 매도처리하고, 신규로 다시 등록하십시오.
4. '출자가액'란에는 변동된 출자가액의 증감사항을 적고, '출자지분'란에는 변동된 출자가액과 자본금에 대한 그 지분비율의 증감사항을 적으십시오.
5. '회사연간매출액'란에는 재산등록 기준일 현재 이전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결산서상의 연간매출액을 적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안에 함께 적으십시오. 감소 기재 시 감소(△)표시를 하십시오.
6. '변동사유'란에는 출자가액 및 출자지분의 증감변동원인행위를 적으십시오.
7. 출자지분 증감원인행위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변동사유'란에 적으십시오.
8.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출자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재일, 출자지분 회수일 등
 - 취득(상실)경위: 회사와의 관계, 출자·회수 목적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출자지분의 자금 출처, 출자지분을 회수한 경우 그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210mm×297mm[백상지(80g/㎡)]

17.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일련 번호	출연자	관계	출연재산 (천원)	보유직위	법인명칭	대표자	형성과정	변동사유
					소재지	목적사업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말합니다.
3. 새로 비영리법인에 출연하거나 이미 등록된 출연재산·보유직위·명칭·소재지·대표자·목적사업이 변동된 경우에 신고하십시오.
4. 출연재산은 변동된 출연재산의 명세를 적고, 종전 신고대비 증감액을 () 안에 함께 적으십시오. '보유직위'란에는 등록의무자가 비영리법인에서 보유하는 직위와 담당 직무를 적으십시오.
5. '변동사유'란에는 신규출연·출연금증가·보유직위변경 또는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변경 등 변동신고사유를 적으십시오.
6. '형성과정'란에는 해당 출연재산의 출연일자·출연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적거나 소명자료를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18. 가상자산

일련 번호	소유자	관 계	거래 소명	가상 자산명	심볼 종목 코드	가격	수량				가액 (천원)				형성과정	비고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종 전	증 가	감 소	현 재		
															•취득(상실)일자: •취득(상실)경위: •소득원(사용처): •기타: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 소유자별로
 - 신규로 가상자산을 취득한 경우
 - 종전에 신고한 보유수량이 변동된 경우
 - 종전에 신고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변동 없이 시가의 변동만으로 가액만 변동된 경우에 등록하십시오.

※ 공개자는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 가상자산거래내역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 소유자별로 금액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의 수량 및 가액을 신고하십시오.
- '거래소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의 경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거래소명(서비스명)을 적으십시오.
 - 외국 거래소의 경우 영문 또는 한글로 정식 거래소명을 적으십시오.
 - 개인 간 교환·매매 등의 경우
 - 개인 간 교환·매매 등 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성명과 취득·상실일자, 거래금액, 교환 매물 등을 적으십시오.
 - 그 밖에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스테이킹,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기타'를 적고 형성과정에 거래 상대방과 취득·상실일자 등을 적으십시오.
- '가상자산명'란 작성방법
 - 국내·외 거래소 및 개인이 거래한 가상자산의 정식 명칭을 적으십시오.
- '가격'란 작성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재산등록 기준일의 최종 시세가액. 다만,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전년도까지 신고된 가상자산이 있는 경우 수량 및 가액은 '종전수량'란 및 '종전가액'란에 적으십시오.
- '현재가액'란은 현 수량에 제6호의 가격을 곱하여 적고, 증감액은 현재가액과 지난번에 신고한 종전가의 차액을 증가 또는 감소로 구분하여 적으십시오.
- 간별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는 적지 않고 '2.재산변동신고 총괄표'의 가상자산 항목 '소계'란에 전체적인 증감액에 대한 변동사유를 적으십시오.
- '형성과정'란 작성방법: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취득(상실)일자·취득(상실)경위·소득원(사용처) 등 해당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적으십시오.
 - 취득(상실)일자: 거래계약일, 매입일 등
 - 취득(상실)경위: 목적(취득·매도 목적 등), 방법(매입·매도·상속·증여 등 여부), 상대방(매입·매도·상속·증여의 상대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
 - 소득원(사용처): 예금, 부동산 매도금, 금융채무, 사인 간 채무 등 해당 가상자산을 취득한 자금 출처, 매도한 경우 매도금 사용처
 - 기타: 그 밖에 형성과정을 소명할 수 있는 내용

주식 [[] 매각 [] 백지신탁] 신고서

(앞쪽)

[]의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함

신고인 (등록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매각 []백지신탁]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등록기관의 장 귀하

작성방법

-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일자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별지에 적고, 증빙 자료(매각의 경우는 주식거래내역서, 백지신탁의 경우는 신탁계약서 등)를 첨부하십시오.
-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예: 서기관, 8등급]

업무 처리절차



(뒤쪽)

1. 매각(백지신탁) 내역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계좌 번호	발행인 (주식명)	종목 코드	수량	매각 또는 신탁 금액 (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2.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									
일련 번호	소유자	관계	예탁 기관	계좌 번호	발행인 (주식명)	종목 코드	수량	가액 (천원)	비 고

작성방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적으십시오.
-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 매각 또는 신탁금액은 보유주식별로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금액, 백지신탁한 경우에는 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각 또는 신탁 일자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 매각 후 잔여주식 내역의 가액은 신고일 기준으로 확인된 가액을 적으십시오. 가액의 산정은 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심사청구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산정하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4서식] <개정 2026. 0. 0.>

주식 [[] 매각 [] 백지신탁] 공개목록

소속		직위		직급 등		성명	
본인과의 관계	매각 또는 신탁주식 내역		매각 또는 신탁 여부	매각 또는 신탁 금액(천원)	매각 또는 신탁 일자	매각 또는 신탁 회사	
	발행인 (주식명)	주식 수					
본인 성명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위의 기재사항은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장성급 장교의 경우 소속은 국방부로 적고, 직위는 적지 마십시오.
-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란 작성방법
 -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 본인과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 순으로 기재하되, 본인 외 친족의 성명은 적지 마십시오.
-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XX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 주식 수는 매각 또는 신탁한 주식 수량을 적으십시오.
- 매각 또는 신탁 여부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 중 처분한 방법을 적으십시오.
- 매각 또는 신탁 금액은 매각금액 또는 백지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 매각 또는 신탁 일자에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적으십시오.
- 매각 또는 신탁 회사는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명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1쪽)

신청인 (등록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담당직무 내용	※ 법령·직제·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심사청구 사유	※ 보유주식과 위 담당직무의 관련성 유무·정도 등에 대한 신청인의 의견을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며 「행정절차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심사결과를 정보통신망(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송달받는 것을 (동의[] / 부동의[])합니다.

100

100

100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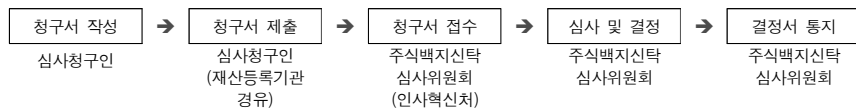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 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업무 처리절차

처리기간: 1개월 (1개월 연장 가능)



210mm×297mm(백상지 80g/㎡)

1.보유주식 내용

[illegible]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류 ETF)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 기존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직무관련성 없다고 결정된 주식은 본인의 직무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적지 마십시오.
3. "종목코드"란에는 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류 ETF)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코드를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으로 적으십시오.
4. '가액'란에는 심사청구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인된 가액을 적고, '비고'란에는 가액 확인일자를 적으십시오.
 - 심사청구기준일은 ① 법 제143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 등이 된 날, ② 법 제63조의3제1항에 따른 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유예의 사유가 소멸된 날, ③ 법 제143조의6제2항에 따른 상속 등의 사유로 새로 주식을 취득한 날, ④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변경된 날, 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등을 말합니다.
 - 가액의 산정은 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 집합투자증권(단일종류 ETF)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심사청구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으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43조의2제3항에 따라 산정하십시오.

2. 직무관련성 여부

순번	소유자	내용
1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관과 관련되는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 관련 여부
	관련여부	
2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조사·감사·검사 관련 여부
	관련여부	
3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특허 관련 여부
	관련여부	
4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관련 여부
	관련여부	
5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감독 관련 여부
	관련여부	
6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 및 물품의 계약 관련 여부
	관련여부	
7	관련사항	보유주식 발생 기업에 대한 법률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관련 여부
	관련여부	
8	기타	

작성방법

위의 관련사항이 공무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여부'란에 "해당 없음"으로 적고,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3. 제출 자료

구분	제출 자료 내용
1. 담당직무 내용 관련 자료	(1)
	(2)
	(3)
	(4)
	(5)
2. 보유주식 관련 자료	(1)
	(2)
	(3)
	(4)
	(5)
3. 심사청구사유 관련 자료	(1)
	(2)
	(3)
	(4)
	(5)

작성방법

1. 담당직무내용 관련자료: '제출자료 내용'란에 해당 기관의 직제 규정, 사무분장, 위임전결 규정 등 신청인의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2. 보유주식 관련자료: 주식발행기업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상장주식은 잔액증명서, 그 외 비상장주식은 기업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의 제목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
3. 심사청구사유 관련자료: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신청인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제목 또는 자료명을 적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십시오(관련 자료에는 보유주식 발행기업과 관련된 각종 수사·조사·감사·검사, 인가·허가·면허·특허, 조세의 조사·부과·징수, 공사 및 물품의 계약 등과 관련이 없을 경우 소속기관의 확인서 등도 포함됨).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백지신탁 관리·운용 중인 주식)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직무 내용	(기존)		
	※ 백지신탁 계약체결 당시의 법령·직제·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현재)		
심사청구 사유	※ 직위 변경 후의 법령·직제·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합니다.

100

101

102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직위 변경 전 담당직무와 변경 후 담당직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직제규정, 사무분장 등)와 백지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십시오.
------	--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 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시오. [예: 서기관, 8등급]

업무 처리절차			처리기간: 1개월 (1개월 연장 가능)	
청구서 작성 심사청구인	→	청구서 제출 심사청구인 (재산등록기관 경우)	→	청구서 접수 주식배지신탁 심사위원회 (인사혁신처)
			→	심사 및 결정 주식배지신탁 심사위원회
			→	결정서 통지 주식배지신탁 심사위원회

– 49 –

(2장)

1 백지신탁 주식 내역

[illegible]

작성 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XX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 가액(천원)은 백지신탁계약금액을 적으십시오.
4. 신탁일과 신탁기관명은 해당 주식을 신탁한 일자와 금융회사를 적으십시오.
5. 비교란에는 신탁기관 담당자의 연락처(전화번호)를 적으십시오.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철회요청서

(앞쪽)

신청인 (등록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심사청구 내용	※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일자, 주식명 등을 적으십시오.		
철회 사유	※ 철회를 요청하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것이 그 요건에 부적합하여 철회를 요청합니다.

☐ Yes ☐ No ☐ DK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귀하

작성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 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용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용시오. [예: 고위공무원 가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용시오. [예: 서기관, 8등급]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심사청구 철회 대상주식 내용

[illegible]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 '종목코드'란에는 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일종목 ETF)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장주식)은** 종목코드를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으로 적으십시오.
4. '가액'란에는 취득과원선 심사 청구서에 기재하였던 '가액'을 적으십시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이해충돌직무 관여사실 신고서

(1장)

신고인 (등록 의무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 ()	
	소속		직위		직급 등	
	주소					
담당직무 내용						
※ 법령·직제·사무분장 등에 따른 담당 직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이해충돌 직무관여 신고사항	직무 구분	발행인 (주식명)	관여내역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사유
			일시	방법	세부내역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직무관여 사실을 신고합니다.

$\frac{1}{2}$
 $\frac{1}{3}$
 $\frac{1}{4}$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직자윤리위원회

귀하

첨부서류	직무에 관련한 내역과 이를 회피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작성 방법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직급 등' 란 작성방법>

1. 고위공무원은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다만, 고위공무원으로서 교육·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전 직위의 고위공무원 직무등급을 적으십시오. [예: 고위공무원 7등급]
2. 고위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직급 또는 직무등급(외무공무원의 경우)을 적으십시오. [예: 서기관, 8등급]

< '이해충돌 직무관여 신고사항' 작성방법 >

1. '구분' 란에는 직무 관여사항에 다음 구분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십시오.
 - a)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과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
 - b)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각종 수사·조사·감독 및 검사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
 - c)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 및 특허 등과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
 - d)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와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
 - e)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
 - f)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등은 공사 및 물품의 계약에 관련된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
 - g)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에 대한 법령상 사건의 심의 또는 심판과 관련되는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
 - h)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하여 주식책임자심사위원회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
2. '관련여역' 란에는 해당 주식의 발행 기업과 관련되어 관여한 직무내역을 일시, 관여방법(결재, 지시, 의견표명 등), 관여 사항의 세부내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예: A기업과의 수의 계약체결을 최종 결재한 한 경우, 계약명 및 금액, 계약시기 등을 세부내역에 기재)
3. 해당 직무 사항이 법령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를 근거 규정과 함께 기재하십시오.

업무 처리절차		신고시기 : 매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
신고서 작성·제출 신청인	➔	신고서 접수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
	➔	신고사항 공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보·공보 게재)

1.신탁(보유) 주식 내역

[illegible]

작성방법

1.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결혼한 딸 제외)의 순으로 적으십시오.
2. ‘발행인(주식명)’란에는 상장주식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단종종목 ETF)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제3시장주식)은 종목명(예: ○○증권, XX전자)을 적고, 그 외 비상장주식은 주식발행회사명을 적으십시오.
3. 가액(천원)은 백지신탁계약금액 또는 신고일 현재 기준의 가액을 적으십시오.
4. 신탁기관과 신탁일은 해당 주식을 신탁한 금융회사와 신탁일을 적으십시오.